



희망의 새 시대! 국세청이 열어가겠습니다.

국 세 청

한국세무사회		결재	
접수일시	2017-03-14	지시사항	
접수번호	3427		
청무과			
담당자			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제출 안내 협조

1.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.

2.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하거나 같은 항 제19호에 따른 자본거래 중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내국 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해외현지기업별로 「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*」을 작성·제출해야 하며, 해외현지기업 관련 자료를 미(거짓)제출시 1천만원 이하 또는 취득가액의 1%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* 해외현지법인명세서,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, 손실거래명세서,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, 해외 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(임대)명세서

3. 이와 관련한 참고자료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, 귀 협회 회원들께 안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1.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제출 안내 1부. 끝.

국 세 청

수신자 한국세무사회, 한국공인회계사회



국세조사관 오기일 국제세원관리 담당관 계장 김승현 담당관 2017. 3. 8. 한창목

협조자

시행 국제세원관리담당관-281 (2017. 3. 8.) 접수

우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-14

/ <http://www.nts.go.kr>

전화번호 044 204 2890 팩스번호 050 31124055 / tax1104@nts.go.kr / 대국민 공개

호국정신으로 갈등과 분열을 넘어 미래로 통일로

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제출 안내

【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자료제출 의무】란 해외직접투자를 하거나 해외 부동산을 취득·운용(임대)한 사실이 있는 내국법인이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외현지법인명세서,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(임대)명세서 등을 제출하는 제도입니다.

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자료제출 의무

□ 제출 의무자

- 해외직접투자 또는 해외부동산에 투자한 내국법인
 - (해외직접투자) 「외국환거래법」 제3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
 - (해외부동산 취득) 「외국환거래법」 제3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자본거래 중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, 투자운용(임대)한 사실이 있는 내국법인

□ 제출대상 자료 (=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)

- 해외직접투자자 : 해외현지법인명세서,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, 손실거래명세서,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
- 해외부동산 취득·운용자 :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(임대)명세서

□ 제출 시기

- 매년 법인세 신고기한까지

□ 미(거짓)제출한 자에 대한 제재

- (과태료 부과)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과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(임대)명세서를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미(거짓)제출한 자와 미(거짓)제출한 자 중 세무서장의 추가 제출(보완)요구기한까지 미(거짓)제출한 자에 대해 각각 과태료를 부과
[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: 1천만원 이하,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(임대)명세서 : 취득가액의 1% 이하 (5천만원 한도)]

자료제출 및 과태료 부과 대상

□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자료제출 대상자 및 제출서류

- (대상자) 해외직접투자 또는 해외부동산에 투자한 내국법인은 법인세 신고 기한까지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

자료제출 대상자	제출서류
가.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지분투자(대부투자 포함)한 내국법인	①
나. 위 “가” 투자자 중 출자지분 10% 이상 소유하고 그 투자금액 1억원 이상인 내국법인	①, ②
다. 위 “가” 투자자 중 출자지분 10% 이상 직·간접 소유하고 국조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	
라. 위 “다” 투자자 중 손실거래금액*이 단일 사업연도 50억원 이상 이거나 최초 손실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5년이 되는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누적손실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내국법인	①, ②, ③
마.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, 개인사업체, 해외자원개발사업 또는 사회간접 자본개발사업에 투자한 내국법인	④
바.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내국법인	⑤
사.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투자운용(임대 포함)한 사실이 있는 내국법인	

< 제출서류 목록 (=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) >

① 해외현지법인명세서	②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
③ 손실거래명세서*	④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
⑤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(임대) 명세서	

* 손실거래금액 : 「법인세법」 제121조의2 제1항 제3호·제4호에 해당하는 거래 건별 손실금액이 단일 사업연도 50억 원 이상이거나, 최초 손실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누적 손실금액이 100억 원 이상인 손실거래

□ 미(거짓)제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

-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자료제출 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법인세 신고기한 까지 미(거짓)제출한 경우 : 최초 과태료 부과
- 세무서장이 미(거짓)제출한 내국법인에 대하여 추가로 제출(보완)요구한 기한까지 미(거짓)제출한 경우 : 추가 과태료 부과